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27 선고 2021가단318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호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진광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종덕

변론 종결2024. 8. 28.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8. 12.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8. 12. 17. 접수 제653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6, 17, 18, 20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조합원에게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고, C은 1998. 9. 1.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원고의 신용부장, 구미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등 2018. 12. 13.까지 원고 조합의 여신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C은 2016. 4.경 대출 자격을 갖추지 못한 D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으로부터 대출명의대여자의 대출신청서를 받은 후 명의자 소유의 재산에 관한 과다감정 후 형식적으로 여신심의를 하여 대출실행을 하는 등 2018.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채무자 명의로 16건 합계 57억 6,7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C은 또한 2018. 1. 31.경부터 2019. 1. 31.까지 4회에 걸쳐 원고의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해 적절한 심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방법으로 합계 57억 4,115만 5,000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 되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합127), 2024. 7. 16. 위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6. 2.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은 퇴직 직후인 2018. 12.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 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부당 대출, 원고의 대출 관련 규정 준수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적절한 심사의무 위반 등의 위법한 행위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불법행위가 행해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C의 채무초과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구미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18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57억 6,700만 원의 대출과 57억 4,115만 5,000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C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여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여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 중 담보가치가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며, 또한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편인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고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나 그 명의를 C 앞으로 하여둔 것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룬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반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반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분양대금도 C 명의로 납부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도 C인 점, ② C은 1998. 9. 1. 원고 조합에 입사한 이래 2018. 12. 13. 퇴직할

때까지 20년간 근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급여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대출금 완납시까지의 피고의 직장생활이 5개월 정도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C은 결혼할 무렵 구미시 E아파트 F호(8,800만 원 상당)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7. 2. 25.경 위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도차액도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를 C 앞으로 하여 두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선영

별지